

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

1. 경기도 고시 제2010-158호(2010.05.11.)로 구리시 인창·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5-1호(2015.03.13.)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9-5호(2019.01.0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20-67호(2020.06.0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 상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,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또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5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고시·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26. 6. 30.

구 리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명 칭 :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146,946.60㎡ [주거용지 94,458.4㎡, 상업용지 3,891.2㎡, 종교용지 1,309.7㎡, 기반시설 등 47,287.3㎡(도로 33,779.1㎡, 공원 2,274.2㎡, 녹지 4,723.6㎡, 광장 1,216.5㎡, 공공공지 1,320.3㎡, 공공청사 3,973.6㎡)]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명 칭 :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나. 사무소소재지 :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4, 5층(수택동 한아름빌딩)
다. 대 표 자 :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기섭
라. 대표자의 주소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17

4. 준공인가의 내역

- 가. 정비구역면적 : 146,946.6㎡ 중 3,973.6㎡
나. 주거용지 : 해당없음
다. 상업용지 : 해당없음
라. 종교용지 : 해당없음
마. 정비기반시설 : 47,287.3㎡ 중 3,973.6㎡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 : 해당없음
2) 도시계획시설(광장) : 해당없음
3) 도시계획시설(녹지) : 해당없음
4) 도시계획시설(공원) : 해당없음
5)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: 해당없음
6)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: 3,973.6㎡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1	공공청사	공공청사	수택동 333-1 일대	2,890.3	경고 제2010-158호 2010.05.11	수택E
2	공공청사	공공청사	수택동 334-9 일대	1,083.3	구리 제2021-21호 2021.02.26	수택E

5. 부분 준공인가일 : 2026. 6. 29.

6.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균형개발과(☎031-550-2411)로 연락바랍니다. 끝.